

**-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-
행정사무감사계획(안)**



2026. 7.

도 시 환 경 건 설 위 원 회

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

제안일자 : 2026. 7. .

제 안 자 : 도시환경건설위원장

1. 제안이유

도시환경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감사기간은 2026. 9. 2. ~ 9. 7. (6일간)으로 한다.
- 감사대상기관은 도시환경국, 교통건설국, 동주민센터로 한다.
- 감사위원 편성은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위원 전원(5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실, 동주민센터 등으로 한다.

3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제5조 등

2026년도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1. 감사의 목적

도시환경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○ 2026. 9. 2.(수) ~ 9. 7.(월) [6일간]

※ 제285회 제1차 정례회 : 2026. 9. 1.(화) ~ 9. 22.(화) [22일간]

3. 감사대상 기관

- 구본청
 - 도시환경국
 - 교통건설국
- 동주민센터
 - 공덕동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사위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도시환경건설위원회	위원장 및 부위원장,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위원 전원	도시환경국	도시환경건설위원회실	신준호	김자영
		교통건설국			
		공덕동주민센터	공덕동주민센터		

5. 감사일정

일 정	내 용	비 고
2026.9.2.(수)	○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- 공덕동 주민센터	
2026.9.3.(목)	○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- 주택과 - 도시계획과 - 건축과	
2026.9.4.(금)	○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- 환경과 - 공원녹지과 - 부동산정보과	
2026.9.7.(월)	○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- 교통행정과 - 교통지도과 - 건설관리과 - 도로과 - 치수과	

6. 감사요령

감사는 도시환경국과 교통건설국의 소관 부서 및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규정 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.

가. 감사 실시 전

- 1) 감사자료 제출 요구
- 2) 증인 등의 출석요구

나. 감사 실시

- 1) 업무보고·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
- 2)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

다. 감사 종료 후

- 1)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

7. 감사 진행순서

- 가. 감사실시 선언
- 나. 위원장 인사
- 다. 증인선서
- 라.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
- 마. 주요 업무 보고·청취
- 바. 감사실시(질의·답변, 현지확인, 관계자의 증언)
- 사. 감사종료 선언

8. 유의 사항

가.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(지방자치법 제13조)

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구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

나. 행정사무감사의 한계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)

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.

다. 제척과 회피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)

-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에게 감사하게 해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.

라. 주의 의무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)

- ① 감사위원은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-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마. 공개 원칙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)

감사는 공개한다. 다만,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바.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)

- ① 현지확인, 서류제출의 요구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·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, 서류제출 요구일, 출석·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·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.

9. 감사결과 보고

가. 방법

- 1)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
- 2)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의 목적, 기간, 대상기관,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·처리 요구사항, 건의사항 기타사항 등을 포함

나. 작성방법

- 1)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
- 2)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
- 3) 위원장은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,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 후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
- 4)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결과 보고서를 채택
- 5) 본회의 의결

10. 행정사항

- 가. 본 계획에 없는 세부사항이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 하에 작성 시행한다.
- 나. 사정에 따라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, 감사반 변경,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.
- 다. 본 계획서를 변경할 경우,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